

# 직 제 규 정

제 정 2023. 2. 13.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한다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본 연맹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 3 조(구분)** ①본 연맹의 임·직원은 일반직·계약직으로 구분한다.

②일반직은 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한다.

③계약직은 정원 외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을 말한다.

**제 4 조(기구)** ①본 연맹 사무처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.

②사무처는 업무수행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.

1. 기획총무부

2. 체육진흥부

③회장은 기존의 부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시 또는 한시기구를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 5 조(정원 및 정원의 관리)** ①본 연맹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②제 1 항에 의한 부서별 정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조정하여 정한다.

**제 6 조(보직기준)** ①사무국장은 일반직 1급부터 2급까지로 보한다.

②부장은 일반직 1급부터 3급까지로 보한다. 다만, 직급별 정원에 의한 부장으로의 임용이 어려울 시 차하위 직급에서 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부장 외에 내부직위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④제4조 제3항에 의한 한시기구의 장은 일반직 1급~4급 직원으로 보한다.

제 7 조(업무분장) 본 연맹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8 조(직무대행) ①사무국장의 유고시에는 기획총무부, 체육진흥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부장이 있을 경우 부장이 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부서장의 유고시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중 직급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회장이 지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회장은 사무국장, 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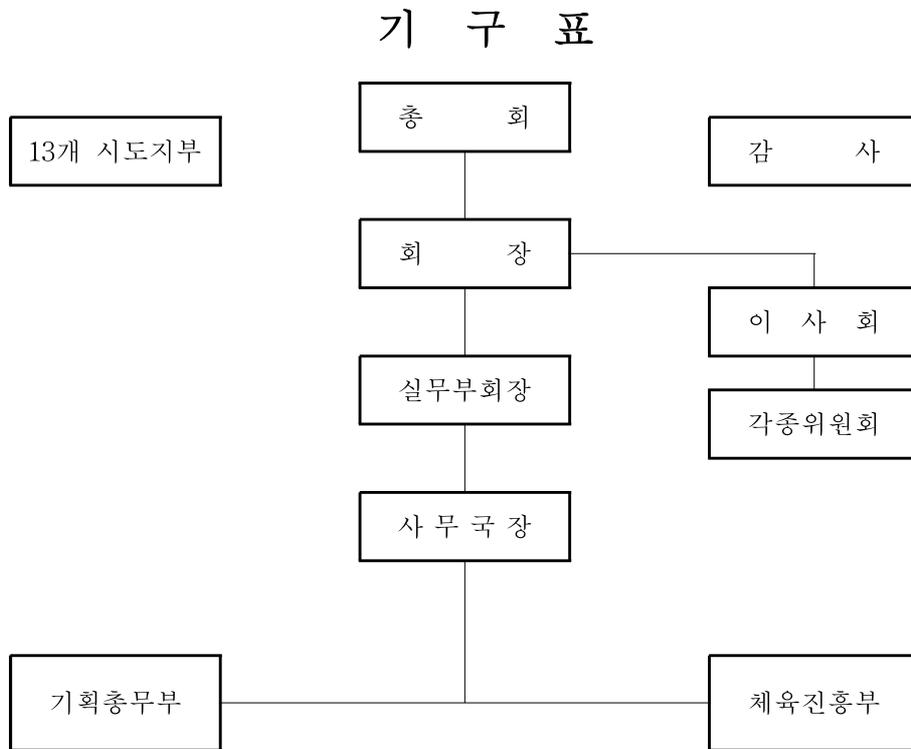
②제 1 항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('23. 2. 13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원 및 직제편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“대한장애인체육회”를 포함한다)로부터 해당 예산을 승인 받고 이를 집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기구표



[별표 2] 정원표

### 정 원 표

구 분		인원(명)
계		6
일반직	소계	6
	1 급	1
	2 급	1
	3 급	-
	4 급	3
	5 급	1